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11. 21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53호로 2024년 11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절차 및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회신에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및 의견에 대한 회신(안 제8조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11.11.~2024.11.16.) 결과: 의견 없음

※ 부서의견(주거사업과)

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의 참여 방법을 확대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제4호에서는 3개로 분산되어 있는 각 조례에 해당하는 용어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개정하고 단순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용어의 정비와 함께 제5항에서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공청회 참석을 통한 의견 진술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출된 의

견의 반영 결과 등을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신설하여 주민 참여 방법의 확대와 알 권리를 규정 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과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제정한 조례로, 2023년 3월 2일 전부 개정 이후,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“광역계획”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여 각 계획 간 상호 연계를 위한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의 개정이 있었기에 상위법에 의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안 제6조 “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”에 따른 안 제8조의 “주민 참여 등”의 개정과 신설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의 구체화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을 시행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실현에 가까운 규정이라 판단됨.
-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광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1.>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, 2023. 8. 8.>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⑥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제5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"진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공공디자인의 구축·관리 및 영역별·권역별·지역별·가로별로 종합적·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
3.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4.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6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7.18.>

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18.>

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(게재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18.>